성주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출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○ 「지방자치법」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, 현행 조례의 일부 규정을 상위법령과 부합하도록 개정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가. “회의수당”을 “의정활동비”로 명칭 변경(안 제2조)

나. 제명 띄어쓰기 등

다. 관련근거 법령의 정비 등

4. 관련법령

○ 「지방자치법」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, 제35조

5. 검토의견

□ **제출자, 개정이유, 주요내용, 관련법령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음.**

□ **조례안 개정이유**

○ 본 조례안의 **상위법인 「지방자치법」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**됨에 따라 **현 조례상에 바뀐 법조문 반영, 명칭변경, 제명 띄어쓰기 등 현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·개선**하여 **효율적인 조례시행**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으로 생각됨.

□ **결론적으로**

○ 신·구 조문 대비표 등 **제반사항을 검토한 결과** 「자치입법 입안심사기준」의 규정에 적합하여 **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**

□ **참고적으로 특히,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상위법이 개정되어 조례를 개정할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의회승인 등 후속조치를 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.**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